# 택견 국가대표 시범단 선발 및 운영 내규

제정 2025. 7. 15.
개정 2026. 2. 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 시범단의 공정한 선발 및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대표”는 국가대표 지도자 및 시범단을 말한다.
2. “국가대표 시범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대표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대한택견회(이하 “택견회”라 한다)가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대표 시범단 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시범단의 훈련 등을 지도하기 위해 택견회가 선발한 사람을 말하며, 시범단의 구성과 역할에 따라 감독, 수석코치, 코치로 구분한다.
3.. 시범단은 택견회가 국제 택견 세미나(이하 “세미나”라 한다) 또는 국제 택견 시범(이하 “시범”이라 한다)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범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단체이다.
5. "시범경력"이란 택견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6. "시범 지도경력"이란 택견회가 증명할 수 있는 경력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택견회에서 실시하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구성)** ① 시범단은 다음과 같이 임원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하며 임원의 직위와 인원은 회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하다.

1. 단장: 1인
2. 감독: 1인
3. 지도자(수석코치, 코치): 4명 이상 6명 이하

③ 단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며 직위와 인원은 단장의 결재로 변경 가능하다.

1. 단원: 25인 이내
2. 연습 단원: 10인 이내

[본조신설: 2026. 2. 4]

**제5조(시범단 지도자 선발 절차)** ① 시범단 지도자 중 단장과 감독은 시범단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범단 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위촉 이후 지도자(수석코치, 코치) 후보자를 정하여 시범단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단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선수단 지도자(수석코치, 코치)를 확정한다.

**제6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 중 시범단 단장을 제외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택견회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감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택견 경기 및 시범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택견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택견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1급 이상

2. 택견 경기 및 시범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택견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택견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1급 이상

3. 택견 경기 및 시범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타 종목 포함)과 택견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택견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1급 이상

4. 택견 경기 및 시범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타 종목 포함)하고 택견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택견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1급 이상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타 종목 포함) 또는 5년 이상의 택견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시범단 지도자 중 수석코치, 코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택견 시범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택견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3급 이상

2. 택견 시범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택견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택견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3급 이상

3. 택견 시범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타 예술 활동 경력이 2년 이상이며 택견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택견 지도사 자격증(민간자격증) 3급 이상

4.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택견 시범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택견 지도경력 있는 사람

**제7조(시범단 단원 선발 절차)** ① 감독은 시범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선발 일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단장 결재 후 단원 후보자 오디션 2주 이전에 공고한다.

② 감독은 단원 후보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여 단장에게 추천한다. 단장은 추천받은 후보자 중 단원 최종 승인한다.

③ 감독은 최종 승인된 단원을 택견회에 제출하며 택견회는 1개월 이내에 임명장 수여를 진행한다.

④ 단원 선발 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차순위를 선정하여야 한다.

⑨ 단원의 부상, 훈련 소집 및 시범 불응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 없이 단원 선발 순위에 따라 차순위 단원 후보자가 단원이 된다.

**제8조(단원의 자격)** ① 단원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단원은 택견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택견회의 소속 선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범단(단장, 지도자, 단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택견회, 시·도택견회 또

는 지회 등의 택견단체(이하 “택견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택견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택견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6. 택견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택견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택견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 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1천만원 초과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징계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단원 선발의 이의신청)** ① 단장은 선발된 국가대표의 명단을 공개한 후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민원사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결과를 회신하고, 그 처리내용을 택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람은 국가대표 선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택견회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
2. 단원 오디션 지원자의 보호자, 지도자, 소속팀의 장

**제11조(자료의 보관)** 시범단 선발과 관련한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 결과 기록지, 회의 자료, 및 회의록 등)는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범단의 임기)** ① 시범단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유임할 수 있으며, 임기는 일수를 기산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장의 결재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6. 2. 4.>

② 결원 보충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기존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2026. 2. 4.>

③ 시범단은 기수제로 운영하며 한 기수당 단장 선임 후 다음연도 12월까지 운영한다.

**제13조(지도자 및 단원의 임무)** ①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원의 훈련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2. 국제 시범 결과보고 및 단원 평가
3. 단원, 트레이너 선발에 대한 의견 제시
4. 단원의 시범 부진 및 부상 등에 따른 훈련제외 건의
5. 국내·외 시범 활동 시 인솔
6. 단원의 훈련에 대한 생활지도와 인권 및 안전보호
7. 단원의 부상 예방 및 관리
8. 기타 단원의 시범 능력과 관련되는 사항 등

② 단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도자가 계획한 훈련 참여
2. 지도자가 시범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3.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4. 택견 관련 이론, 실기 지식 습득

**제14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과 대회에 임하고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삼가고 국민에게 자랑스러운 국가대표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대표의 보호 및 지원)** 택견회는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여건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적정한 수준의 훈련수당 지원
2. 국가대표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절차 마련
3. 선수의 부상 예방 및 관리

.

## 제 3 장 포상 및 징계

**제16조(포상)** 시범단의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단장은 택견회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4]

**제17조(포상대상)** 시범단 포상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명감으로 임무를 완수하여 타의 귀감이 된 자
2. 협회 및 시범단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3. 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26. 2. 4]

**제18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은 포상을 제한한다.

1.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활동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수사 중이거나 감사 관련 기관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본조신설: 2026. 2. 4]

**제19조(징계)** 단장은 지도자 및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택견회에 징계를 요청 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시범단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명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시범단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범단으로 선발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범단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본조신설: 2026. 2. 4]

**제20조(포상 및 징계의 집행)** 포상 및 징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택견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준한다.

[본조신설: 2026. 2. 4]

## 제 4 장 훈 련

**제21조(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훈련: 연간 교육 및 훈련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2. 특별훈련: 정기훈련 외에 협회와 단장의 소집으로 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00.00]

**제22조(훈련 참가의 의무)** 시범단의 일원은 필히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무단 훈련 불참자 및 훈련태도 불성실자에 대해 지도자는 단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4]

## 제 5 장 파 견

**제23조(파견 시범단 구성)** 파견 시범단 임원, 단원의 구성은 단장 및 국가대표 지도자의 추천으로 택견회가 최종 결정한다. 단, 필요에 따라 택견회는 구성변경 및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4]

## 부칙(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26. 2. 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회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